

[공고번호 : 대전-성장사다리-05]

2024년 대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중국 광저우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출 상담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행 사 명)** 2024 중국 광저우 수출상담회
- **(행사기간)** 2024. 11. 20.(수) ~ 11. 23.(토)
- **(행사장소)** 중국 광저우 일원
- **(공동주관)** 대전TP, 충남TP, 충북TP,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단
- **(모집규모)** 대전지역 7개사 내외
- **(지원대상)** 대전 소재 (본사, 연구소, 공장 등 사업자등록 기준) 중소·벤처 기업으로 대전 주축산업* 전·후방 관련 기업

* 대전 주축산업 : 정밀의료바이오헬스산업, 물류·국방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산업

지원대상구분	소비재	산업재
수출초보기업	'23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23년도 수출액 30만불 이하
수출주력기업	'23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23년도 수출액 30만불~300만불
수출강소기업	'23년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	

* '23년 수출액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기준

○ **(지원내용)** 지역 기업 수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매칭(1:1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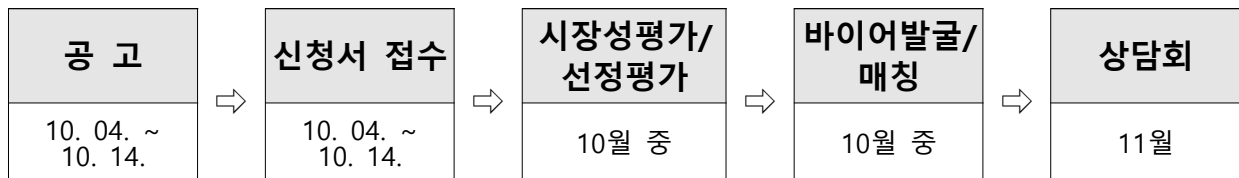
지원내용	세부내용
숙박지원	- 1개사 1인 숙박 지원 (지정호텔 1실 3박)
통역지원	- 1개사 1인 통역사 지원 (수출상담회)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	- 바이어 발굴, 바이어 정보 제공, 해외바이어 1:1 상담(기업당 5개사 이상), 사전 시장조사 등
이동지원	- 공항 ⇨ 호텔(상담회장) 이동, 호텔(상담회장) ⇨ 공항 이동

※ 항공, 숙박 등 : KOTRA 지정 여행사를 통해 진행

※ 세부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내용 외의 항공료, 추가업무(상담회 외 통역, 개별이동 등)에 따른 비용은 기업 부담

2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상담회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1.20.(수)		이동 (인천 ✈️ 광저우)	
	18:00~20:00	사전 간담회	
11.21.(목)		수출상담회	행사장
	09:00~10:00	통역원 미팅	
	10:00~17:00	1:1 수출상담회	
	17:00~17:30	상담실적 정리	
	18:00~20:00	사후 간담회	
11.22.(금)	전일	개별 방문 상담 / 시장조사	
11.23.(토)		이동 (광저우 ✈️ 인천)	

※ 상담회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년 10월 4일(금) ~ 10월 14일(월)
- **(신청접수)** 2024년 10월 4일(금) ~ 10월 14일(월)
- **(신청방법)** 온라인(해당 공고 선택) 신청(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 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 필요 서류 누락 시 선정제외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 등록
 - 최종 선정기업에 한해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온라인 신청 필요
 - * KOTRA 신청방법 개별 안내 예정

구분	등록서류		비고
필수 제출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양식	날인 必
	2	사업자등록증	
	3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 ('21, '22, '23년)	
	4	'23년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수출액 0원도 발급
	5	국세 납세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영문 기업 및 제품 소개자료, 홍보물, 인증서 등	
해당시	8	우대가점 증빙자료	공고문 참고

④ 평가절차 및 기준

- **시장성 평가(KOTRA)** : 국내기업 품목 시장성, 수출가능성(수출실적, 매출액, 수출 준비, 역량), 해외바이어 상담주선 가능성 등
- **선정평가(대전TP)** : 시장성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원의 필요성 (40)	지원의 필요성	• 기업의 수출의지 • 상담회 참가배경 및 필요성의 적합성
	수출준비도	• 수출준비 정도 (제품완성도, 매뉴얼, 홍보물, 포장, 해외인증, 홈페이지 등)
지원 타당성 (40)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수행(수출) 목표의 명확성
기대효과 (20)	수출가능성	• 본 사업 수행을 통한 수출실적 달성 가능성
	사후활용 관리계획	• 사후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CH)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2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2
6	'24년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1

5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 될 수 있음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
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
하며, 평가 후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 관리 등을 위해
매출, 수출, 신규고용 등 지원종료 후 2년간 성과 모니터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허위·부정으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기업)에게 있고 평가 제외 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국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6 관련법규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07.17)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24.02.27)

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소속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지원단	오창현 책임	042-930-4867	sky@djtp.or.kr

- RMS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참고] (주축산업 분야) KSIC 코드

주력산업 분야	번호	업종명	번호	업종명
① 정밀의료 바이오헬스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②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1	레이더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9	기타측정시험항해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③ 나노 반도체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7219	기타측정 시험 항해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